

서울특별시의회  
제322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 
폐지조례안  
제 안 설 명



2024. 2.

서울특별시의회  
최유희 의원(국민의힘, 용산2)

□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!

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최윤희 의원입니다.

□ 「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」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「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2019년 3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제정·시행됨에 따라 교육청이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었습니다.

□ 이에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당 지급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사라짐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합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

의 조례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